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상대비 비축대상물자를 정비하고,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4차 산업시대, 비축물자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비축대상물자를 정비(안 제17조)

나.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동일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고, 상위법의 기술인력 하한 연령 변경(20세→19세, '14.1.7.시행) 이후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3. 7.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철도차량·하역장비”를 “항공·선박·철도차량·하역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통신설비·통신용품”을 “정보통신설비·정보통신용품”으로, “통신용물자”를 “정보통신용물자”로 한다.

제2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 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 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 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제17조(비축대상물자)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철도차량·하역장비</u>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5. <u>항공·선박·철도차량·하역</u> <u>장비</u>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u>통신설비·통신용품</u> 및 그 밖의 <u>통신용물자</u>	7. <u>정보통신설비·정보통신용품</u> -- <u>정보통신용물자</u>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 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제22조(훈련의 면제)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한국과학기술원법</u> 」에 따 른 <u>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u> <u>및 학생</u>	4. 「 <u>한국과학기술원법</u> 」에 따 른 <u>한국과학기술원</u> , 「 <u>광주과</u> <u>학기술원법</u> 」에 따른 <u>광주과</u>

	<u>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 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 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임직원 및 학생</u>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 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과 <u>20세</u> 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 1일까지의 기혼 여성	14. ----- ----- ----- -- <u>19세</u> ----- -----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연 락 처	(044) 205 - 4342